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 적정 유지 기준 마련 등〉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19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 (안 제12조의2 신설)	2
2. 개정안 부칙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훈기 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12. 17.

3. 회 부 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또한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이행·점검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안 제12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유치원 및 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의무 부과)하며,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고시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2(학급당 적정 인원 수에 관한 고시 등) ① 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1)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²⁾에 따라 관할청³⁾이 정하고 있음.

□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4)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 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 3) 관할청이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 및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임.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⁵⁾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마련한 공통의 기준에 의해 과밀학급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로 규정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바, 전국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일정한 수준으로 규율되어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음.

□ 다만, 농산어촌, 신도시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인구 분포, 학령인구, 학교시설, 통학환경 등 교육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써 적정 학생 수 유지 기준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
- 4)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의 신·증축 등을 통한 교실 확충, 교원 수급, 학생 분산 배치를 위한 통학구역 조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소요 및 교원수급계획⁶⁾, 학교용지 확보 가능성 및 학령인구 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제3항에서 이행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권한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도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⁷⁾에 따라 매년 “학급당 학생 수”를 포함한 각종 교육통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참고로, 교육부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2023.4.)”에 따르면 매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감소할 예정임.

< 2024~2027년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안) >

학교급	학년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초등	학생 수(천 명)	2,539	2,423	2,268	2,131	1,976
	신규채용 교원 수	3,561	3,200~2,900명 내외		2,900~2,600명 내외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 평균 14.4명)	15.4	14.8	13.9	13.2	12.4
	학급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 평균 20.3명)	21.1	20.0	18.6	17.3	15.9
중등	학생 수(천 명)	1,857	1,880	1,908	1,868	1,841
	신규채용 교원 수	4,898	4,500~4,000명 내외		4,000~3,500명 내외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 평균 13.6명)	11.8	12.1	12.4	12.3	12.3
	학급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중학교*) 평균 22.6명)	25.0	25.2	25.5	24.8	24.4

※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실제 인력 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학급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감률을 반영한 추계 ※ OECD 통계에서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산출하지 않음

(출처: 교육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2023.4.)

7)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초·중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에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학령인구 변화, 교원정책 등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매년 직접 관리하며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닌 교육부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⁸⁾.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 일부수정

-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교원 정원 추가 배정과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학급당 학생수 기준은 학령인구 감소, 교원 정원, 재정상황, 지역별 여건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② 경기도교육청 : 신중검토

- 「교육기본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타 시·도에 비해 인구 유입 요인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학교 신·증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학급당 적정 인원 수 기준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학급 수 조정에 따른 교원 수급 여건의 안정적 확보, 학교 신·증설을 위한 재정 소요 및 추가 학교용지 확보 등 선결 과제에 대

8)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는 학교신설·폐교, 교원 수급, 학생 배치 계획 등 교육청별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법령상 일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부장관이 교육통계조사(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탁 실시 중)를 통해서도 매년 학급당 학생 수 등 관련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이행 현황을 조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한 종합적인 검토와 단계적인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③ 경북대학교 : 신중검토

- 지역·학교별 여건 차이 무시
 - 농산어촌, 도서지역 등 학생 수가 적은 곳은 20명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학급 분리나 교원 배치 발생
 - 반대로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히 20명 기준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설 확충·교원 확보 병행
- 재정·인력 부담 과중
 - 전국적으로 20명 이하를 고정하면 교원 증원, 교실 확충 등 막대한 예산 필요
 - 특히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고정 기준은 비효율적이며,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해
- 교육 효과는 단순 인원 수로 결정되지 않음
 -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교육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교사의 전문성,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학습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더 큰 영향 미침
 - 20명이라는 획일적 기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함
- 탄력적 기준 필요
 - 학급당 인원은 지역 특성, 학년, 과목, 교육 방식(온·오프라인 혼합)에 따라 달라져야 함
 - 저학년은 소규모가 바람직하지만, 고학년·특정 과목은 협력학습을 위해 일정 규모 필요
- 법령의 경직성 문제
 - 법률에 '20명 이하'라는 수치를 명시하면, 향후 학령인구 변화나 교육 패러다임 변화(예: AI 기반 맞춤형 학습)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법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바⁹⁾, 개정안의 경우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부칙과 같이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9)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